#### 남해안 게절도시 미라 여수

제2024-92호 2024년 10월 18일(금) 人



보

시정지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발행인: 여수시장 ■ 발행소: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조 례			
이 여수시 조례	제2137호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
이 여수시 조례	제2138호	여수시 여수순천 1019시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8
이 여수시 조례	제2139호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이 여수시 조례	제2140호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3
이 여수시 조례	제2141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이 여수시 조례	제2142호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35
이 여수시 조례	제2143호	여수시 기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이 여수시 조례	제2144호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43

회				
람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 0 월 / 8 일

여수시장 2001년

역수시 조례 제2137호 붙임 역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37호

#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 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 된 기업을 말한다.
  - 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보호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 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여수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신고 조사에 노력해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야 한다.
-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업무) ① 시장은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 2.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 3.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 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 ②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③ 공익신고에 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첩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 해서는 안된다.
  -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하다.

-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 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익신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 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4.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 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10조(위원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익신고 사안 발생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 신고자보호업무 팀장으로 한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여수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 3. 공익신고 접수 · 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 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여수시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시장은 환경조성사 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표창장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7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부조리 보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수시 부조리 보 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신고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 0 월 / 8 일

여수시장 기간이

역수시 조례 제2138호 붙임 역수시 역수순천 10·19시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자원 등에 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38호

# 여수시 여수·순천 10·19시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지원과 복지증진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화합과 상생에 기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사람을 말한다.
- 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매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 제5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 식의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신청장소와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 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서명 한다.
  - 2.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 3. 시장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 1.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 2.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0조(지급현황 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복지지원 등) ①시장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다.
  - 1.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 2.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복지시설의 사용료 감면
  - 3.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감면
  - 4.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 5.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시설·휴양시설·관광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 6. 수도요금 감면
-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일부와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유공자등 (비고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위탁 세대, 세 자녀 이상 가구,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 ②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감면기준란에 1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 호에 따른 유족을 신설하고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수강료는 제3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50% 감

면비율 적용함.

- ③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 ④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
- ⑤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 ⑥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다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	면 비 율	(%)	
기교비 미 가용교 스스크 카머리사	진료비중	치과부문			수질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	본 인	치석	복합	제증명	 건사
	부 담 금	제거	레진		심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100	50	50	100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00	50	50	100	

⑦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 ⑧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기준 라."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9)「여수시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설한다.
- ⑨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법」 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 중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①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에 대하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역수·순전 10·19사건 희생자 유속 생왈보조비 신정서   ├──								처리기간				
									15일 이내			
희	생	자	성 (성	명 별)		등록기	준지					
_,	O	'	구	분	(사망자, 행	<i>'방불명자</i>	<u>=</u> 7	7분)		결정일		
지	2 L	급	성 (성	명 별)		생년월	일					까와 관계
대	· 상	<b>^</b> [	주	소						(3		)
신	처	0]	성	명		지급대/ 와의 관						
<u>'</u>	0	Ľ	주	소		,				(8		)
지;	급겨	]좌	금융	기관	년 O	예금주			계3	타번호		
	-				천 10·19시 조비를 신청	. –	가	우족	생활보	보조비 7	기원 _	조례」제5
									L	<u>य</u>	월	일
						신	l청인	]		(	서명	또는 인)
O-	수	-시	장	귀하								
첨.	부스	· 기류			ト 유족 결정 등장 사본 1		사본	- 1부				
				2	등 명 민 원	년 대 <i>조</i>	: 확	인	처 리	인		
*	아리	배 표 <del> </del>	는 신	청인이	기재하지 C	아니함.						
확인	<u>민</u> 사	-or		도소 : ]]4조º	에 따른 지급	급대상 ㅇ	ᅧ부	•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별지 제2호서식】

#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힝	생	자	성 (성	명 별)		등록기준지			
T	Ö	^\I	구	분	<i>(사망자, 행방</i>	<i>\불명자 등 구분</i>	<u>4</u> )	결정일	
지		띠	성 (성	명 별)		생년월일			희생자와 의 관계
대	상	자	주	소				<b>( B</b>	)
신	청	인	성	명이		지급대상자와 의 관계			
	O	L	주	소				(33)	)
비 결 <sup>,</sup>	대 정 시	_							
	원	조리		데6조					두 생활보조비 자로 결정되었
					년	월	일		
					여-	수시장	직인		

### 【별지 제3호서식】

#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희 생 :	τL	성 (성	명 별)		등록기준지				
의 ~~   	^[	구	분	<i>(사망자, 행</i>	방불명자 등 구	7 <u>분</u> )	결정일		
지]	급	성 (성	명 별)		생년월일			희생자와 의 관계	
대 상	자	주	소				(33		)
신 고	oì	정	명		지급대상자 와의 관계				
	ᄔ	주	소				(28		)
신고사-	유	(X} {	<i>망, 국</i> .	외로 이주, 기	<i>'E})</i>				
					순천 10· 른 지급 변·				
						ı	년	월	일
					신고인	<u>l</u>	(	서명 또는	= 인)
   여수	.人	l장	귀	ōŀ					

### 【별지 제4호서식】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43.03	희생자			지급	대상자		راجاما	지 급	지급계좌	-31
연번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성명 (성별)	희생자와의 관 계	신청일	지 급 결정일	지급계좌 (예금주명)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³]

#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 0월 / 8일

여수시장 20010

역수시 조례 제2139호 붙임 역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39호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 2. 상시고용 50명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 심의 및 여수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36조의2(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2. 상시고용 5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 여부,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 심의 및
	지원 규모 등은 위원회 심의 및 여수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한
	<u>다.</u>

#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 > 월 / & 일

여 수 시 장 2001 100

역수시 조례 제2140호 붙임 역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40호

#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 5.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 제2장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 사업
  - 2. 중소기업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 3.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지원 사업
  -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역 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직접 또는 관내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보육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창업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사업화 직접지원, 특허출원,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는 창업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제품홍보, 판로개척,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이익 증대를 위하여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우수기업 및 근로자 지원

- 제10조(우수기업 및 근로자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여수스타기업수출탑 등을 시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기업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근로자 등 사기 진작) ① 시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고취를 위하여 관내에 근무 또는 소재하는 근로자·법인·단체(이하 "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시장 표창, 국내외 연수, 문화체육행사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경우
  - 2. 수출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경우
- 제12조(적용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수기업이 될 수 없다.
  -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 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 3. 지방세 탈루 은닉 등의 행위가 드러난 경우
-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장 중소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13조(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또는 자문한다.
  - 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2. 제5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중소기업 전략 추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 ③ 중소기업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 2. 관내 중소기업 임직원 또는 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 3. 정부, 전라남도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16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

다.

-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 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2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23조(준용)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 월 / 8 일

여수시장가

여수시 조례 제2141호 붙임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41호

#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 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장애정 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 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으로 등록된 장애 인은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 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 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 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 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개	정	óŀ
′ II	$\circ$	ו ו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현 행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하 "가족"이라 한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 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 2. (생 략)
- ② ~ ⑤ (생 략)

<u> 〈신 설〉</u>

#### 개 정 안

	<u>2027년</u>	<u>년 12월 31</u>
<u>일</u>		

-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 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 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생활약취 방지** 및 저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 월 / 8일

여 수 시 장 가까기까

여수시 조례 제2142호 붙임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42호

#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 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생활악취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 월 / 8 일

여수시장 2007/1000

역수시 조례 제2143호 붙임 역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43호

# 여수시 기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 및 제6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 ·개축·재축을 할 수 있다.
  - 1. 기존 축사의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설로 재축, 개축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 3.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고 당시의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각 세대주 동의를 80퍼센트 이상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 센트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함)
-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 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제2조제5호 관련)

축종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
공통사항	·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풍시설(높이 2m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소, 말, 양, 사슴, 젖소	<ul> <li>· 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5cm (젖소는 10cm)이상 깔아야 한다.</li> <li>·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 · 흡수 · 흡착 · 응축 · 세정 · 산화 · 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li> </ul>
돼지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 · 오리	<ul> <li>・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여야 하고, 바닥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li> <li>・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여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li> <li>・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li> </ul>
개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5.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에
	<u>따른 시설을 말한다.</u>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②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
	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u>할 수 없다.</u>
③ 일부제한구역과 그 구역에서	<u>4</u>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u>별</u>	<u></u> 별표
<u>표</u> 와 같다.	<u>2</u>
④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u>&lt;삭 제&gt;</u>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	
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
	한 예외)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
	고 법 제11조 따라 허가・신고
	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설치 중
	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하는 경우에는 증축·개축·재 축을 할 수 있다.

- 1.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 설로 재축, 개축하는 경우
-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 는 경우
- 3.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고 당시의 제한거리 내 거주 하는 각 세대주 동의를 80퍼센 트 이상 받아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증축 하는 경우(다만, 1회에 한함)

제6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 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 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 제9조 (현행 제5조부터 제 7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5조 ~ 제7조 (생 략)

N.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필수농자제 지원 조례를 이에 공또한다.

2024년 / 0월 / 8일

여수시장 2001/20 원

여수시 조례 제2144호 붙임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144호

#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 자재로 비료, 퇴비,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여수시 필 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 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 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 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며 다음 해 상반기 중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

- 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 ·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 제9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 2. 지원금의 부정 수급
  -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제10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 1. 지급대상자, 품목, 농업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 2.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 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농업기술센터소장
  - 2. 농업기술센터 농자재 업무담당 과장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 나. 이통장협의회 추천 2명

- 다. 농업 관련 기관 · 단체의 대표 2명
- 라.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